

< 위택스의 개편(2023.2.13.예정)에 따라 세무 대리를 위한 위임 설정에 변화가 있어 이를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>

지방세 조회납부 서비스 「위택스(weTax)」 개편에 따른 세무대리인 위임 설정 변경 사전 안내

	위택스 개편 전 업무처리 방법	위택스 변경 후 업무처리 방법
바뀌는 점	- 세무대리인이 문서첨부하여 신청 후, 공무원이 승인하여 자격 획득 후 업무처리 (납세자와 대리인간 위임 관계 확인 어려움)	- 위택스의 신규 전자적 위임 기능을 이용하여, 납세자가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을 등록하고, 대리인이 이에 동의하여 위임 관계 설정 - 반대로, 대리인이 수임을 신청하고 납세자가 동의하는 방법도 가능 * <u>국세청 홈택스와 동일한 방법</u>으로 변경됨
위택스 개편 후 세무대리인이 하실 일	(해당없음)	- 개편된 신규 위택스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전자적 위임 기능을 이용하여 납세자와 대리인간 위임 설정 필요 - 세무대리인(개인/법인 사업자)은 엑셀파일 업로드를 이용한 일괄 수임신청 가능 * 모든 대리인은 위임 등록을 하여야만 업무처리 가능 *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개편(2024.2.13.) 이후 홈페이지 안내 참조